

용인시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

제정 2011. 2. 14 훈령 제314호
일부개정 2014. 4. 7 훈령 제362호
일부개정 2021. 9. 15 훈령 제4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용인시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외 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용인시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14. 4. 7>

제3조(대상업무)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.

제4조(대외직명) 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.
<개정 2014. 4. 7, 2021. 9. 15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은 업무분야별·직렬별·직급별·계급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·부여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9. 15>

제5조(대외직명 사용)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. 다만,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식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공문서 기안문·시행문,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
2. 공로패, 기념패, 명패,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「용인시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제목 행의 “담당순위”를 “팀순위”로 하고, 별표의 “담당”을 “팀”으로 한다.

② 「용인시 구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제목 행의 “담당순위”를 “팀순위”로 하고, 별표의 “담당”을 “팀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4. 4. 7 훈령 제362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9. 15 훈령 제497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